#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2016. 7.19. 개정 2017.11.27. 개정 2021.11.22. 개정 2022.11.29. 개정 2024. 8. 9. 개정 2025. 5. 1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 조에 따라 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은행의 임직원이 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직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은행의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이를 은행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 1. "내부통제"란 은행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 2.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

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 3.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 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 4. "책무"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에 따른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 5. "준법감시"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은행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령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말한다.
- 6. "준법감시체제"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 7.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 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 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 8.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1에 따른 금융관계법령등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 은행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개정할 때에는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 **제5조(내부통제 조직)** 은행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
- 제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 ②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의무 이행을 감독한다.
  - ④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계획 등의 제출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거나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의2(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① 은행은 이사회내 위원회로 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 방안 마련

-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등 필요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거나 변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제5항에서 정하는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내부통제협의회)** ① 은행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내부통제협의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 관련

-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 ③ 내부통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4. 임직원의 윤리의식 · 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
- 제9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 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규(이하 "법규"라 한다)를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은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는 등 소관업무 및 소관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하다.
  - ③ 제7조 제2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 따라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부점장은 소관부점과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

제 제도 및 정책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업무수행 시 준수절차) 은행은 임직원이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규 등으로 문서화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

### 제1절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

- 제12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 근무경력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준법, 리스크 등 내부통제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를 선임한다.
  - ③ 은행은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 발생시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임기) 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 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제14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 1.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 3.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 4.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 의견 표명
- 6. 위법사항 등(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 7. 필요시 이사회 등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다만 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된다)
- 8. 준법감시 담당직원 등에 대한 일부 근무평정
- 9.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 10. 기타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준법감시부서등) ① 은행은 준법감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준법감시업 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규모(총직원 대비 비율 및 최소인원수) 및 전문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 제16조(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① 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

- 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2.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 3.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규에서 겸직을 금지한 업무
- ③ 준법감시인이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은행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 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 영하여야 한다.

### 제2절 준법감시체제 운영

- 제17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령,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 2.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 요구
  - 3.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작성·배포
  - 4.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 5.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문
  - 6. 감독당국, 검사부서 및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지원
- 제18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① 준법감시인 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 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다.

- ②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9조(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 1. 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 2.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제외)
  - 3.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 4.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 5.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 ②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과 관련 하여 정기·수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21조(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

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등 발견시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2조(타 조직과의 협조)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계획 및 감사위원회의 검사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이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조정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장 내부통제 관련 은행(임직원) 준수사항

- 제23조(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이 제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및 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 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은행의 고유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한다.

- ⑤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행 이용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국가,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은행 이용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 ①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2.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5조(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 ① 은행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 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 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 제26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 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은행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익 제공행

위,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행위,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기타 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신용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의2(재산상 이익제공) ① 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이익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제공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
  - 2.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
  - 3.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
  - 4. 제3호에 따른 점검·평가의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
  - 5.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
- 제27조(불공정거래행위 방지) ①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예금 가입 등의 강요행위,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행위, 부당한 편익 요구 또는 수령행위 기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금융사고의 예방) ① 대표이사는 「은행법」 제34조의3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금

- 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지점(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 2.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에 관한 사항
- 3.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4.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에는 본부부서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직급별 역할·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 ③ 대표이사는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고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 1. 권한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2. 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확인에 관한 사항
- 3. 수기문서의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은행의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8조의2(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①「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른 보고책임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한다.
  - ②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③ 보고책임자는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 2.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 제29조(이해상충 관리방법 및 절차)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또는 총괄·집행책임자)(이하 "정보교류차단총괄임원등"이라 한다)은「은행법」제28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수행 시 은행과 은행이용자간, 특정 이용자와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우려가 있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인식·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총괄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30조(장기근무 관리) 대표이사는 직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금융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근무자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 제31조(보험상품 모집) ① 은행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1.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2.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3.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 4.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 5.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제32조(금융투자업 관련 내부통제) 은행은 경영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마련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별표3 중 4.호(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가 은행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3.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별표3에서 금융투자 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한 사항

# 제5장 보칙

제33조(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 조직단위의 장은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담당직무 중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기준 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 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 한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정보전달체제)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

- 소통으로 은행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5조(영업점 등 자체점검) ① 은행은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검사(이하 "자점검사"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자점검사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윤리 강령(또는 행동규범. 이하 같다)을 제·개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 여 각 부점에 비치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처 운영, 신고자 포상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내부통제체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윤리강령 제·개 정 및 운영을 준법감시부서가 아닌 여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준 법감시부서는 준수여부 점검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7조(내부고발제도)** ① 은행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금지 등 보호조치와 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행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8조(명령휴가) 은행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38조의2(상시감시)** ① 은행은 본부부서 및 영업점의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 ② 은행은 상시감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 제39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①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제40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제39조의2(활동 내역의 공시) 은행은 이 기준에 따른 이사회등의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연차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40조(세부지침 위임)** 이 규정의 시행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개정절차) 이 기준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조문의 체계·표현 수정 등 실질적 변화 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은 법무전문위원회 의결로 개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에 적용례, 경과조치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